

#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심 사 보 고 서

1995. 12. 19.  
내부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제출일자 : 1995년 12월 9일

회부일자 : 1995년 12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제120회 정기회

제6차 내부위원회(1995. 12. 19.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부국장 최경주)

가. 제안이유

- 각종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시험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 기준액을 현실에 다소 근접되게 인상 지급함으로써
- 시험위원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시험관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함.

## 나. 주요골자

○ 시험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액을 19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과 동일하게 개정

### 가. 문제 출제 수당

- 객관식(문항당) 2,300 → 3,000원

### 나. 문제 채점 수당

- 주관식 { 10부까지 기본료 25,000 → 30,000원

{ 1부초과 660 → 800원

다. 면접시험종사원 수당(일당) 6,000 → 6,500원

### 라. 감시 수당(일당)

- 평일 6,000 → 6,500원

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오 창 환)

충청북도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이는 현행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시행과 관련한 종사자들에게 시험의 규모 및 성질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지급 가능 범위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으로

'96년도 부터 실시되는 각종 시험의 시험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지급기준액이 인상책정 됨에따라 '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액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주요내용으로는

시험수당 지급범위인 출제수당, 채점수당,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, 문제편집

수당, 문제선정심의 수당, 감시수당 중 출제수당의 객관식 출제수당에 있어 현행 지급액인 2,300원을 3,000원으로 하고 채점수당의 주관식 채점수당에 있어 10부까지의 기본료를 현행 25,000원에서 30,000원으로 하고 1부 초과 부당 600원을 8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면접 및 실기시험의 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일당을 6,000원에서 6,500원으로 하고 평일감시수당 6,000원을 6,500원으로 인상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시험시행 관련 시험수당 지급기준액을 현실에 다소 근접되게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수정안요지 : 충청북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안의 별표 시험수당지급 기준표 감시수당 중 공휴일 수당액 “10,000원”을 “20,000원”으로 자구수정

7. 심사결과 : 수정동의안 8인중 8인 찬성으로 동조례안 별표 시험수당지급기준표 중 공휴일 감시수당 “10,000원”을 “20,000원”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도원안대로 의결

8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9. 기타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. 충청북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- . 신규 조문 대비표
- . 충청북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